

2023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

# 온라인 사업설명회

2023.2.13.(월) 15:00~16:00

한국문화예술위원회

# “창작에서 확산까지, 2023년 ‘아트 체인지업’ 공모 안내”

온라인 예술  
창작 활성화와

## [콘텐츠 창작(진입, 성장)]

•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예술실험 및 콘텐츠 창작 지원

온라인  
예술생태계  
조성을 위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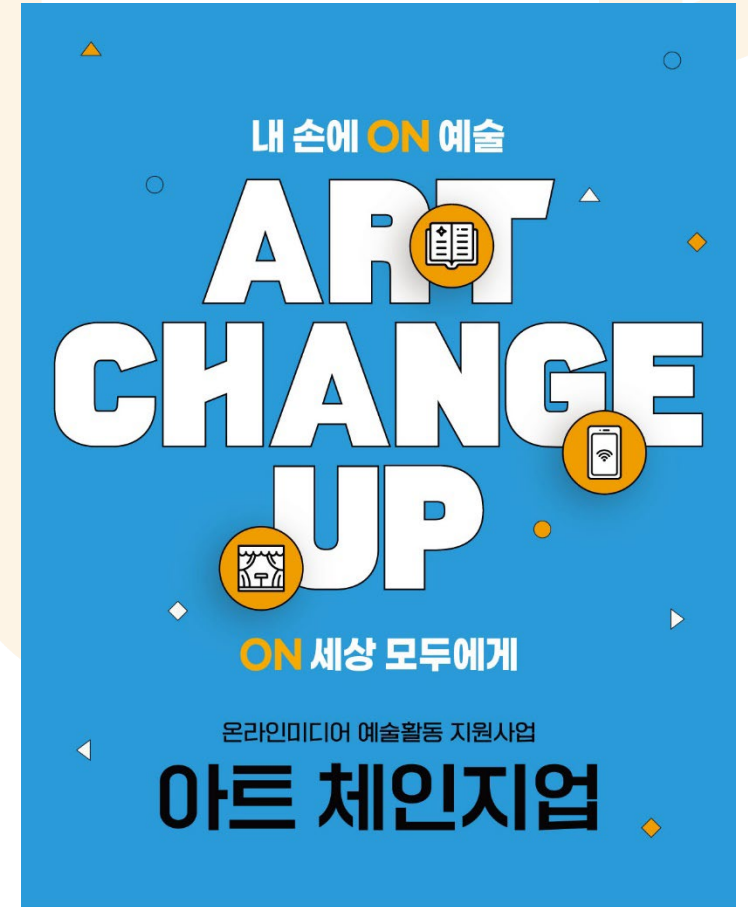
## [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]

• 온라인 플랫폼·채널 기반 향유·확산

다양한 확산  
통로 마련

[확산 서비스(매개)] 온라인 예술콘텐츠 향유 증대

[확산 서비스(수익)]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익창출 방안 모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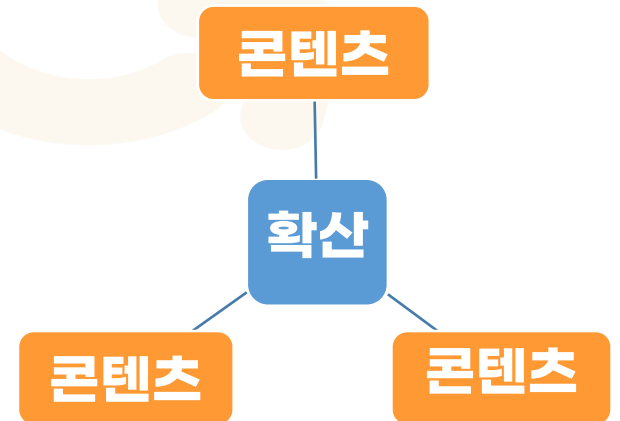
## 공모사업 개요 ①

### 사업 목적

- 기존 오프라인 중심 예술활동에 벗어나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**온라인에서의 예술 창작역량을 강화하고, 확산 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온라인 예술 생태계 구축**
- 사업 누리집(artson.arko.or.kr)을 통한 예술콘텐츠 개방으로 **대국민 온라인 예술향유 기회 제공 및 창작자 대상 온라인 예술활동 정보 제공**

### 지원대상 사업

- **(콘텐츠 창작-진입, 성장)** 온라인미디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**기초예술분야** 소재 기반의 **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콘텐츠 제작 지원**  
\* 오디오, 영상, 앱, 게임 등 형식 제한 없음
- **(확산 서비스-매개, 수익)** 예술 콘텐츠들 간의 연결 및 확산 위한 **매개 서비스, 지속성장 가능한 자체 플랫폼 기반 창의적 예술 서비스의 수익구조 마련 지원**



## 공모사업 개요 ②

### 지원대상

- **예술인**(개인, 프로젝트팀, 기획자 포함)
- **예술단체·기업**(중소기업, 스타트업,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, 소셜벤처 등)  
\* 사업유형별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별도 확인 필요

### 지원분야

- **기초예술분야 전 장르**  
\* 문학, 시각예술, 연극·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다원예술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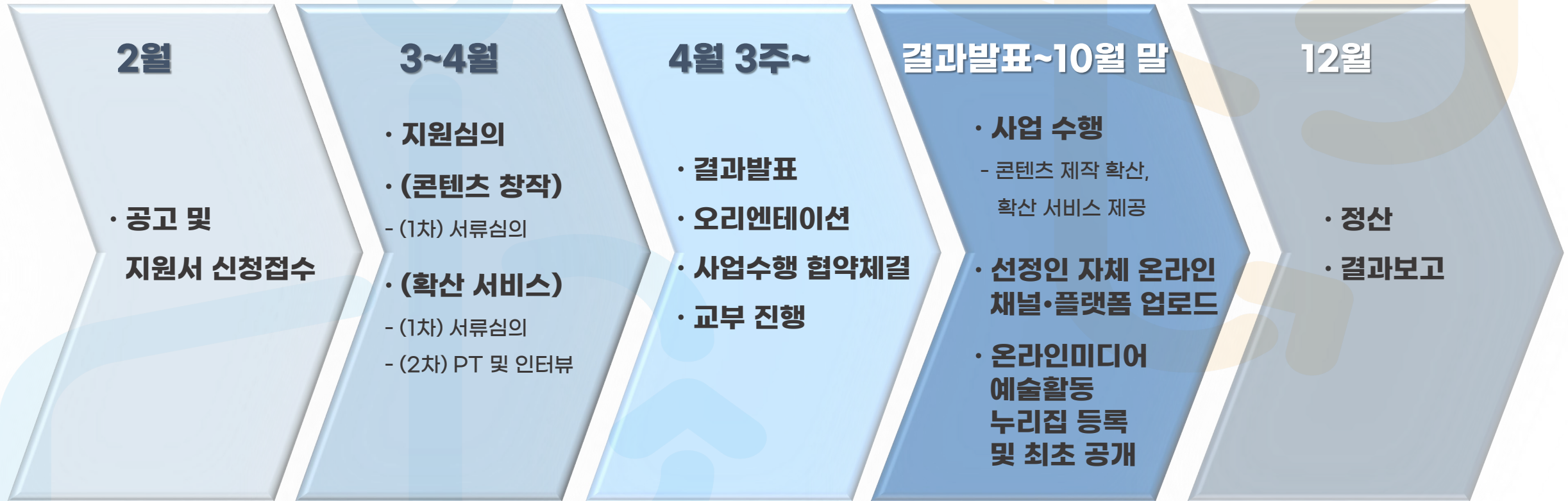
### 지원내용

- **기초예술분야 소재 기반의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콘텐츠 제작 및 확산 서비스 제공**  
\* 오디오, 영상, 앱, 게임 등 형식 제한 없음
- **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(1천만원~7천만원 내외)**  
\* 총 사업비(국고보조금 지원결정액 + 자기부담금액)의 최소 10%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
  - 콘텐츠 창작(진입) : 1천만원/2천만원 중 택1
  - 콘텐츠 창작(성장) : 3천만원~5천만원
  - 확산 서비스(매개, 수익) : 3천만원~7천만원

### 사업기간

- **선정결과 발표일(4월 3주 예정) ~ 10.31(6.5개월)**  
\* 사업 수행 완료 및 예술인·단체 자체 보유 채널 업로드,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업로드 완료 기준

# 추진 절차 및 일정



## 사업유형 및 내용 - 콘텐츠 창작(진입, 성장)

### 콘텐츠 창작(진입)

#### 지원목적

온라인 예술창작 **진입** 및 **실험** 지원

#### 지원대상

**새롭게** 온라인 예술활동을 시작하거나,  
다양한 **소규모 창작**을 **실험**하고자 하는  
**예술인·단체·기업**

#### 지원내용

- ① 온라인미디어 활용, 콘텐츠 제작 실험 및 발표비
- ② 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지원(최대 1백만원)

#### 지원규모

**1천만원 / 2천만원 택1**  
(정액지원, 60건 내외 선정)

#### 유의사항

**콘텐츠 창작(진입)** : 정액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에 맞지 않게 신청된 사업은 지원결정액이 정액 지원 기준으로 하향 조정됨(예: 신청액 1천2백만원 → 지원결정액 1천만원)

### 콘텐츠 창작(성장)

온라인 예술창작 **발표** 지원

온라인미디어를 **창의적으로 활용**한 새로운 예술  
창작이 가능하며, **규모있는 프로젝트 실행 역량**을 갖춘  
**예술인·단체·기업**

- ① 온라인미디어 활용, 콘텐츠 제작 발표비
- ② 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지원(최대 1백만원)

**3천만원~5천만원**

(사업계획 규모별 지원, 70건 내외 선정)

# 사업유형 및 내용 - 확산 서비스(매개, 수익)

## 확산 서비스(매개)

## 확산 서비스(수익)

지원목적

온라인 예술콘텐츠의 대국민 향유 확대

온라인 예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 
온라인 예술 콘텐츠의 유통·확산 및 수익화 방안 모색

지원대상

기제작된 온라인예술콘텐츠의 확산 활성화를 위해  
새롭게 기획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 
**예술인·단체·기업**

창작자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 
**자체플랫폼(기구축)보유**  
**예술단체·기업** \*개인 지원 불가

지원내용

온라인 예술 향유 활성화 및 예술가치 확산을 위한  
시장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직접 경비

자체 구축·보유 플랫폼 기반의 시장맞춤형  
창의적 예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직접 경비

지원규모

**3천만원 ~ 7천만원**

(사업계획 규모별 지원, 7건 내외 선정)

**3천만원 ~ 7천만원**

(사업계획 규모별 지원, 3건 내외 선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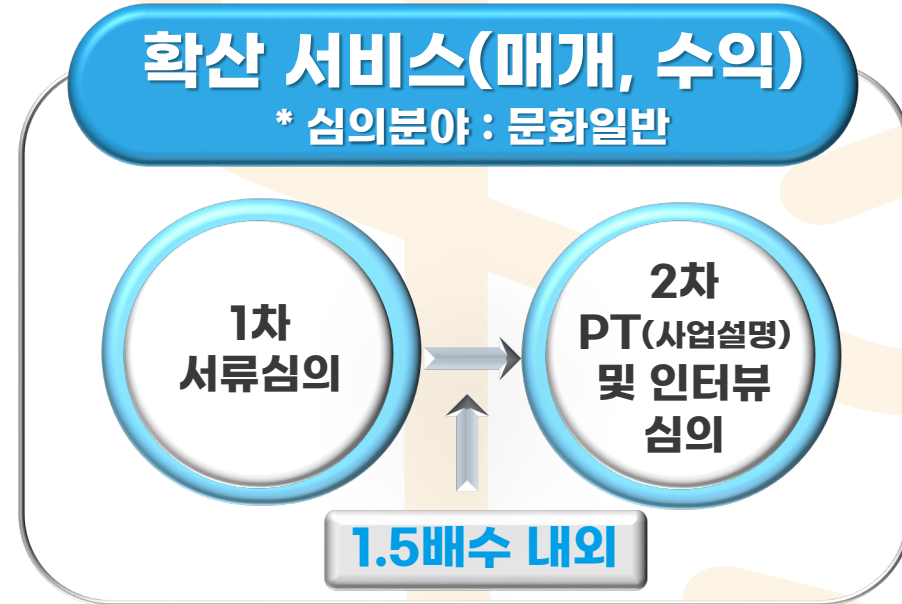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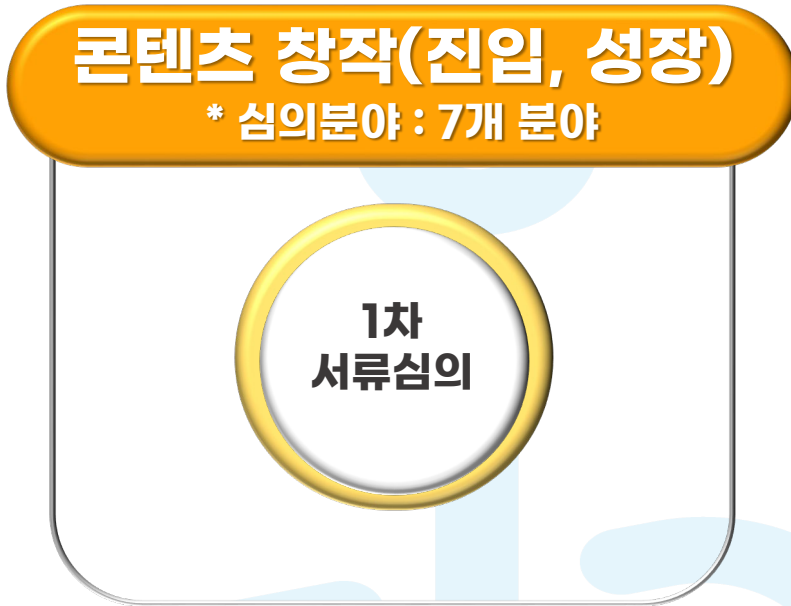
지원대상  
플랫폼·채널

- ① 상용 플랫폼,
- ② 신청주체 개발·구축·운영 자체 플랫폼

- ① 신청주체 개발·구축·운영 자체 플랫폼

- ① 예술을 주된 주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·채널으로서 ② 사업 공고일('23.2.6.) 이전에 구축 및 개설되었으며,  
③ 해당 플랫폼·채널을 기반으로 활발한 예술 확산 활동이 지속된 것에 대한 증빙 필요

## 지원심의 절차 및 기준



### 심의기준 (유형별 세부평가내용 상이 / 공고문 참조)

사업 이해도 및 계획 충실성(40%)	온라인미디어 활용 필요성 및 창의적 활용 여부, 계획 구체성, 향유/이용자 고려 등
수행역량(30%)	예산규모 및 사업기간 내 실현 가능성, 사업계획 실행 역량 등
기대효과(30%)	예술적 성취도, 향후 활용도 및 지속발전 가능성

##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\_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

- ① **(교육용) 교육용 목적의 프로젝트** \* 학교 및 소속단체, 산학협력단 수행 사업 지원 불가
- ② **(단순 기존 작품 재실현 및 중계)** 기 제작된 작품(영상·이미지 등)의 단순 재실현/업로드 프로젝트
- ③ **(오프라인 작품의 부속형태)** 오프라인 공연 등의 무대장치 및 소품이 되는 미디어 영상 제작 등
- ④ **(홍보·마케팅용)** 신청인·단체의 작품만을 단순 홍보·마케팅하는 등 부수적인 콘텐츠 창작
- ⑤ **(국내 향유·참여 불가)** 국내 거주 향유자(관람객)가 향유할 수 없는 프로젝트 \* 지역적/언어적 제한없이 향유가 가능하여야 함
- ⑥ **(유해성 콘텐츠)** 선정적, 폭력적, 비윤리적 콘텐츠
- ⑦ **(타인 권리 침해)**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, 초상권·저작권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프로젝트
- ⑧ **(동일한 사업의 중복수혜)**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(문예기금, 국고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)
- ⑨ **(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)**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, 문체부 산하기관 및 단체,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(재단) 및 단체
- ⑩ 기타 <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>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,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

##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\_예산 편성(보조금, 자부담 공통) ①

- **(과도한 사업비 편성 주의)** 구체적이지 않고 과도한 편성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예산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- **(자부담)** 총 사업비(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 + 선정자 부담금)의 10%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적용사업 \* 현물 자부담 불가
- **(신청인 본인 사례비)**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책정가능하나,  
 참여역할 및 참여율, 총사업비 내 예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교부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
  - \* 법인사업자 대표자 : 인건비 편성 / 개인, 개인사업자 대표자 : 일반수용비 편성
- **(부가세)** 신청단체가 과세사업자인 경우, 공급가액만 총 사업비 내 편성 가능(부가세액은 사업비 외 자부담)
  - \* 사업자등록증(일반과세자) 소지자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
  - \* 개인 및 비영리법인, 고유번호증, 법인사업자등록증(면세사업자) 소지자는 해당 없음(공급가액, 부가세액 모두 총 사업비 내 편성 가능)
- **(홍보비)** 캠페인 물품 제작 및 구입비(굿즈 제작 등)는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(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불가)
- **(교육비-콘텐츠 창작만 해당)** 교육비 환급 및 전자기기 등 제품 제공 교육상품 수강 불가, 개인교습 형태 불가
- **(편성 불가 항목)** 내부 보유 장비·시설 등 현물 불가, 자산취득성 장비·물품구입비, 운영비성 경비,  
 사업기간 외(보조금 교부 확정 이전 및 실사업기간 종료 이후) 비용 편성 불가
- **(해외 확산)**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위해 외국어 번역 및 검수 관련 비용 편성 권장
- **(배리어프리)** 자막, 수어,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편성 권장

##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\_예산 편성(보조금, 자부담 공통) ②

### • (인건비) 본 사업 참여 단체 소속직원(급여 지급 등 고용관계)에게 대가 지급 가능

- 콘텐츠 창작(진입, 성장) : 총 사업비 20% 이내 / 확산 서비스(매개, 수익) : 총 사업비 30% 이내
- 문예진흥기금·중앙부처·자치단체·광역문화재단 운영 등의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주40시간 근무 인건비 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인력의 경우, 추가 인건비 및 사례비 편성 불가 \* 예 :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,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등

#### 인건비

- 고용/근로계약서 체결(신청주체인 단체와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내부 직원)
- [보수] 정규 임직원(법인사업자 대표 포함), [상용임금] 무기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, [일용임금] 일용직 근로자
- (보험가입 구분) 4대 보험 가입(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X)
- (원천세 신고 구분) 근로소득
- (참여율) 소속기관(단체)의 급여기준(인센티브 등)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
- \*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상이 수행하는 단체의 모든 업무 중 본 프로젝트 위해 투입하는 시간의 비중  
예) 급여기준 산정 : 월 3백만원 급여 \* 참여율 월 근무일수의 30% \* 3개월 = 270만원

#### 사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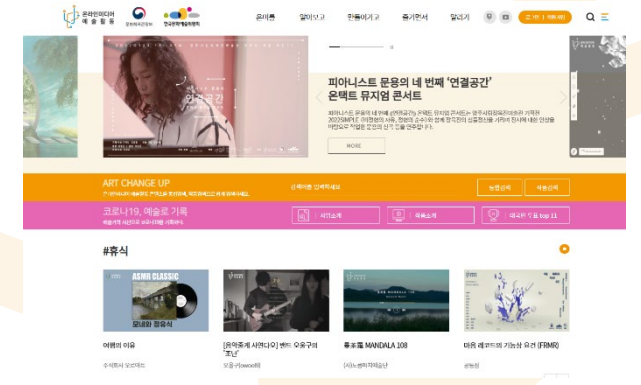
-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관계(사업수행인력-프리랜서에 대한 대가 지급)
- (보험가입 구분) 예술인 고용보험(예술인 고용보험 : <http://kawf.kr/html/aMenu/artinsure.html>) 및 상해보험 가입
- \* 계약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이하기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 필요
- (원천세 신고 구분) 사업·기타·종합소득

### • (회계검증 수수료)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 제도 운영 중으로 회계검증수수료 포함하여 예산 편성

# 선정 시, 유의 및 확인사항

## 결과물 제출방식

- [1단계] **선정자·단체의 온라인 채널(SNS, 홈페이지, 플랫폼 등) 내 사업 수행 결과물**  
(예술콘텐츠 등) 업로드 및 공개 게시
- [2단계] **사업누리집 '즐기면서(메뉴)>작품소개'** 에 사업수행 결과물 등록 및 최초 공개
- [3단계] **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실적(결과)보고서 제출**



[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\(artson.arko.or.kr\)](http://artson.arko.or.kr)

##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

- **(이용허락 동의)** 제작 콘텐츠의 개방·공유·확산을 통한 온라인 예술 활성화 및 대중과의 점점 확대를 위한 **저작물 이용허락 동의 체결 및 관련 교육 이수** \*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기간 : 사업 종료 이후 최소 1년('24.12.31.~) 이상
- **(참여 당사자 대상 안내 및 동의)** 콘텐츠 창제작에 있어 저작권, 초상권, 저작인접권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안내 및 동의 필수

## 사업수행 협약체결 의무화

-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과 상호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**사업수행협약서**를 교부 이전 체결해야 함(예술위원회 ↔ 보조사업자)
- **(사업 성실 이행)** 지원조건, 사업내용, 보조금 교부(5천만원 이상 분할 교부) 및 정산, 결과보고, 정보공시 등 이행 의무
- **(권익 보호)**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, 서면계약 체결,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조치 등

## 지원신청 및 결과발표

- 신청접수 : ~ 2.22.(수) 18:00
- 신청방법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, [www.ncas.or.kr](http://www.ncas.or.kr))을 통한 온라인 접수 \* 이메일, 서면, 우편접수 불가

구분		제출서류	비고
공통	필수	지원신청서	· 행정 결격 사항 : ①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사업유형별 신청자격요건 미달, ②타사업에 지원신청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분류 잘못 선택), ③필수서류인 별도 양식의 '지원신청서' 미제출, ④양식 미준수(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), ⑤ 신청인·단체(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) 기준으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, 여러 개 유형에 지원신청한 경우
공통	선택	기타 참고자료	·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

### ※ 지원신청 유의사항

- (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)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중복 지원 불가
- (시스템상 지원신청 주체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시,  
‘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’하여야 함
- (사업유형별 공고문 확인) 홈페이지 게시물이 2종으로 구분되어 있음 ‘콘텐츠 창작(진입, 성장)’, ‘확산 서비스(매개, 수익)’

# 2023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'아트 체인지업'

- 지원신청서 작성 방법 설명
- 질의응답